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트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 항 반영	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(생 략)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(생 략)	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<u>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 항 반영	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(생 략)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12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1. ~ 5. (생 략) ③(생 략)	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(현행과 같음)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12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의2 <u>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</u>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 항 반영	제 23 조(판매가격) ①(생 략) ②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	제 23 조(판매가격) ①(현행과 같음) ②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

	투자신탁의 고객이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제 4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	투자신탁의 고객이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4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5영업일</u>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6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 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9영업일</u>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10영업일</u>)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③(생략)	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5영업일</u>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6 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 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9영업일</u>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10영업일</u>)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③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41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④(생략)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	제41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④(현행과 같음)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

	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<u>제5영업일</u>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~ 2. (생략) ⑥(생략)	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<u>5영업일</u>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⑥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42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2. (생략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~ ④ (생략)	제42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<u>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<u>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45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	제45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</u>)

오타 정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 호변 정정	3. ~ 5. (생략) 6. 집합투자업자의 합병, 분할, 분 할합병 <u>또는</u> 영업의 양도·양수 7. (생략) <신설> <신설> 8.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② ~ ⑨ (생략)	<u>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 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다)</u> 3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집합투자업자의 합병, 분할, 분 할합병 <u>또는</u> 영업의 양도·양수 7. (현행과 같음) 8. <u>투자신탁으로서 설정 이후 1년</u> 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</u> <u>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</u> <u>정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</u> <u>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</u> <u>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</u> <u>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</u> <u>될 수 있다는 사실</u> 9. <u>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(법 시</u> <u>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</u> <u>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</u> <u>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</u> <u>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</u> <u>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</u> <u>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</u> <u>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u> 10.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 ② ~ ⑨ (현행과 같음)
	<신설>	<u>부칙</u> (<u>시행일</u>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